

# 해외 경쟁정책 동향

본 협회 조사부

## 미 국

### FTC, 전자모기퇴치기계의 효능 효과에 관한 허위표시에 대해 심판개시 결정

FTC는 플로리다주 올란드에 소재하는 기업이 전자모기퇴치기계, 해충구제기계 및 공기청정기의 광고에 있어서 허위와 실증되지 않은 표시를 이용했다고 해서 심판개시결정을 내렸다. FTC의 주장에 의하면 Lentec International, Inc.와 그 경영자인 Joseph Durek 및 Lou Lentine은 동사의 상품인 ① Mosquito Contro는 모기를 격퇴하는 효과가 있고, 또한 West Nile Virus의 예방에 적당해서 살충제를 대신하게 되고, ② 해충구제기기는 초음파기술과 전자파기술에 의해 생쥐, 쥐, 박쥐, 바퀴벌레 및 그 밖의 집안의 해충·해수를 격퇴할 수 있으며, ③ 공기청정기는 오존과 이온화에 의해 집안의 갖가지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광고했다. FTC의 주장에 의하면 관계인은 이러한 상품에 대해 표시내용을 증거로

내세우는데 있어 적절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지 못했고, 또한 Mosquito Contro에 대한 표시는 허위라는 것이다.

Lentec International은 공기청정기, 해충구제기기, 가정용품, pet용품, 각종 개인용품 및 회중전등 제품 판매업자이다. 이들 상품은 인터넷(www.lentec.com)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매판매, 카타로그 판매 및 개별 방문판매에 의해 판매되고 있다.

#### 모기퇴치기기

관계인은 몸에 장착한다거나 몸 가까이에 둔다거나 하는 전지식 Mosquito Contro가 숫모기 또는 잠자리에 유사한 소리를 내고, 그로 인해 피를 빠는 암모기를 위협해서 쫓아내게 된다고 표시했다. Mosquito Contro에는 팔찌타입, 열쇠고리타입, 탁상타입이 있고, 10달러부터 20달러의 가격대에서 판매되고 있다. FTC에 의하면 관계인은 다음의 허위표시를 행하고 있다.

- Mosquito Contro가 모기를 격퇴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 Mosquito Contro가 West Nile Virus의 예방에 성공해서 모기를 죽이거나 격퇴하는 화학살충제로서

그 외의 물질에 대해서 유효한 대체물이 된다는 점

방역센터에 의하면 초음파를 이용한 기기에는 모기의 흡혈을 방지하는 효과는 없다. 방역센터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고 있다.

- 생산자의 지시에 따르면서 DEET를 포함한 벌레제거제를 사용할 것
  - 긴소매 셔츠와 긴바지를 착용할 것
  - 유모차에 모기장을 칠 것
  - 새벽과 해질녘에는 외출하지 말 것
- 모기제거제와 West Nile Virus에 관한 것 이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www.cdc.gov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 해충 등 구제상품

Lentek은 또한 「Pest Contro」라는 브랜드명으로 여러 가지 해충구제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쥐, 생쥐, 바퀴벌레는 주택의 해충·해수를 구제할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상품은 콘센트에 꽂는다는 전지를 넣어 사용하는 것이고, 일부 상품은 옥외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Pest Contro 상품은 초음파를 발생해서 해충 등에는 소리가 들리면서 인간에게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불쾌한 음을 발생 시키게 하고 있다. 그래서 불유쾌한 소리에 의해 해충 등을 집 밖으로 쫓아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떤 Pest Contro 기기는 또한 가택의 배선을 전자장으로 바꿔 해충 등을 벽 밖으로 쫓아내고 있다.

FTC에 의하면 관계인은 초음파가 쥐·다람쥐 등의 해수·해충을 집으로부터 구제·격퇴한다고 하는 표시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FTC의 주장에서는 일부의 Pest Contro 기기가 가택의 배선을 전자장으로 바꿔서 해충을 격퇴한다고 하는 표시는 허위라고 하고 있다. 더욱이 FTC의 주장에 의하면 특정 기기가 일정의 넓음(예를 들면, 2,500평방피트(약 232.6㎡=약 70평)) 구역에 대해 해충 등을 구제·격퇴한다는 점과 또는 다른 상품이 집으로부터 사슴, 너구리, 스킨크 등의 동물을 쫓아낸다는 표시에 있어서 관계인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 공기청정기 「Sila」

FTC에 의하면 관계인은 「Sila」라고 하는 브랜드명으로 몇 가지의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고 있다. 여기에는 실내 공기청정기, 자동차의 담배용 라이터에 접속하는 기기, 헤어기기가 있고, 20달러부터 70달러까지 판매되고 있다. 「Sila」상품은 오존과 이온의 생성에 의해 실내의 공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FTC의 주장에 의하면 관계인은 공기청정기 「Sila」에 관한 다음의 표시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 Sila가 공중에 떠다니고 있는 오염

물질, 먼지, 연기, 매연, 화분(花粉), 곰팡이, 균, 박테리아, 세균, 담배연기, 스모그, 자동차 배기가스, 자동차 매연, 애완동물의 털, 비듬, 화학제품의 매연, 벤젠, 암모니아, 크로로필름, 필름알데히드, 벤조피렌, 일산화탄소, 트리크로로에틸렌 및 키시렌을 사용자의 호흡 범위의 공간에서 제거 및 청정케 하고, 실질적으로 감소시킨다는 표시

- Sila가 알레르기, 불면증, 고초열(枯草熱, 花粉症), 두통 및 피로를 방지하고 병을 낫게 한다는 표시

본 건 심판개시결정 및 고지명령에 관해서는 FTC의 심의에 의해 5-0으로 결정됐다.

2002. 8. 28. FTC 발표

### FTC, 감량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관한 보고서 공표

『FTC는 11월에 감량효과를 표방하는 광고(Weight-Loss Advertising)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

연방거래위원회(FTC) 간부들은 금일 「감량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관한 보고서 : 현재의 경향 분석」을 공표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식사제한이나 운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과장된 감량효과를 표방하는 등의 허위 또는 오인을 가져오는 표시가 감량효과를 표방하는 상품광고에 있어서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표시가 10년간 증가경향에 있다고 하는 점이다. 또한 FTC는 이와 같은 광고가 공

중의 건강에 주는 영향이나 감량효과를 표방하는 상품에 있어서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2년 11월 19일 공공 workshop을 개최하기로 공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판매업자가 허위표시나 오인을 가져오는 소비자에 의한 권장, 기만적인 사용전·후의 사진을 이용해서 판매를 행하고 있다. 또한 조사를 한 광고-주요한 전국적인 인쇄미디어에 게재된 광고 포함 가운데 40% 가까이는 적어도 한번쯤 확실히 허위라고 할 수 있는 표시가 포함되어 있었고, 더욱이 광고 가운데 55%는 적어도 한번쯤은 허위 가능성이 높은 광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광고는 이따금 실현 불가능한 감량효과를 약속하고 있었다. 광고의 과반수 가까이 식사제한이나 운동을 안하고도 체중을 감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표시하고 있다. 가령 어느 광고에서는 표제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고 있었다 : 「식사제한도 운동도 하지 않고 1일 당 1파운드(약 0.9kg) 감량!」 다른 광고에서는 급격하고도 장기간의 감량이 표시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장기간의 사용으로 1주당 8~10파운드(약 3.6~4.5kg)를 감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감량효과를 표방한 상품의 광고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이 보고서는 동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가를 명백히 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판매업자는 허위 또는 오인을 가져오는 표시를 신중하게 계속해서 피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악랄한 사업자는 그 상품을

팔기 위해 힘든 노력을 요하지 않는 감량을 약속하는 허위표시를 행하고 있다. 이것은 소비자에게 공정하지 않고 또한 합법적인 사업자에게도 공정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위법이고,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FTC의 Timothy J. Muris 위원장은 언급했다.

이 보고서는 2001년 2월부터 5월까지의 모든 주요 미디어에 의해 행해진 300개의 선전물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며, 「건강한 체중관리를 위한 파트너 쉽(PHWM)」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다. 이 파트너 쉽은 과학, 학계, 건강관리 전문가, 정부, 민간기업, 그리고 건강한 체중 달성과 유지에 관한 건전한 가이던스의 촉진을 임무로 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것이다.

「감량에는 기적적인 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Richard Carmona 공중위생국장은 말했다. 「감량에 의한 보다 건강한 생활을 보내기 위해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보다 안전한 방법은 건강한 식사와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 - 지방분을 줄이고 하루에 적어도 5접시의 과일을 먹고, 술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다음으로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다. 하루에 30분, 주 5회의 워킹으로 체중을 감소시켜 쾌적하게 될 수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광고와 1992년에 행해진 광고를 비교하면, 10년간 감량효과를 표방하는 상품 및 기만적인 광고의 수가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2개의 주요한 경향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1) 1992년 당시의 「저칼로리입니다. 식사대신에 좋습니다

다」 등이라고 하는 광고에서 2001년에는 식사제한과 운동을 하지 않고도 효과가 있다는 광고로 변해오고 있다.

2) 1992년에도 2001년에도 광고에는 기만적인 또는 허위의 표시가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의 광고에서는 오인을 초래할 것 같은 특정의 효능효과를 약속하는 것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다.

1990년 이래 FTC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 다이어트·서플리먼트, 민간의 감량시설, 감량기 및 운동기구 등의 허위 또는 오인을 초래하는 감량효과와 표방에 대해서 93건의 신고를 처리해왔다. 이와 같이 FTC의 획기적인 규모의 집행에도 불구하고 오인을 유발하는 기만적인 광고는 계속해서 시장으로 침투하고 있다.

건강 전문가로서, 허버드대 의학부의 영양의학 주임이고, PHWM의 멤버인 의학박사 George L. Blackburn씨는 「우리는 비만의 만연과 동일한 형태의 감량효과를 표방하는 상품 서비스의 허위 또는 오인을 가져오는 광고표시를 염려하고 있다. 많은 광고표시가 칼로리 섭취를 줄이거나 운동의 증가 없이 바로 감량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 감량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있어서 기만적, 허위 또는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의 사용이 만연하고 있고, 잠재적으로 위험하다. 특히 많은 서플리먼트는 그 효과가 입증되어 있지 않아서 어쩌면 건강상의 심각한 위험에 관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감량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관한 워크샵

감량효과를 표방하는 기만적인 광고

가 증대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FTC는 이와 같은 광고가 공중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나 감량효과를 표방하는 상품의 오인을 초래할 것 같은 표시의 증식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public forum을 제공하는 1일간의 워크샵을 2002년 11월 19일에 개최할 것을 별도로 공표했다.

### 소비자 개발

소비자, 사업자, 언론에 있어서의 정보원이 되는 금회의 보고서는 [www.ftc.gov/dietfit](http://www.ftc.gov/dietfit)에서 입수 가능하다. FTC는 감량효과를 표방하는 상품 또는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 신속하고 간단한 감량을 약속하는 상품, 프로그램은 속임수입니다.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칼로리 섭취를 감소하고, 운동을 늘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 급격하게 감량하면 할수록 리바운드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전문가는 주당 1파운드(약 450kg)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 기적적인 감량상품 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속적인 감량효과를 표방하는 상품·프로그램, 과장된 표시를 의심해 주세요.

건강한 감량계획을 어떻게 세울까에 관해서 조언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PHWM의 웹사이트 [www.consumer.gov/weightloss](http://www.consumer.gov/weightloss)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2002. 9. 17. FTC 발표

**FTC 위원, 독점금지법에서의 효율성에 관해 발표**

지난 11월 8일 미연방거래위원회(FTC)의 Thomas B. Leary 위원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2002년 추계 전미변호사협회에서 독점금지법에서의 효율성에 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5년 동안의 학술적 연구를 토대로 역사적 관점에서 어떻게 독점금지 정책에서 효율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논의했다. 이 연설에서는 또한 기업결합 및 기타 분야에서의 효율성 분석과 관련된 시사적인 이슈들을 폭넓게 다루었다.

Leary 위원은 효율성에 관한 독점금지차원에서의 검토에 있어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역사적 및 정치적 이슈들은 복잡하다고 전제하면서, 1960년대와 70년대 중반까지의 “적대감 또는 무시”라는 용어를 시작으로 독점금지 분석에 있어서의 역사적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듯이 경제분석 지향적인 독점금지로의 전환”으로 이어졌다. 회상해보건대 독점금지 분야에서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것을 빨리 수용했다”고 그는 말했다.

다음 논점인 기업결합의 효율성에 관해서는, 소수의 사건만이 법정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기업결합의 효율성에 관한 경쟁당국의 내부적 입장이 이해관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부적 절차에 있어서 경쟁당국은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비용의 절감보다 효율성을 더 고려”하려고 한다고 그는 말했다. 이러한 내부 절차는

효과적이며 투명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한편 적대적 기업결합에 있어서는 현재 많은 이슈들이 있음을 시인했다.

높은 시장집중도와 높은 효율성의 상쇄 효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다. Leary 위원은 또한 “오로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정도만 큼만” 효율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 의미 있는 효율성”인지 여부의 검토에 관한 “passion”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실패한 기업결합에 대한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많은 수의 기업결합들이 예상되는 편익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보다 순항적인(proactive) 기업결합정책이 적절하다고 단순히 결론내리는 것은…… 잘못된 수 있다”고 경고했다.

Leary 위원은 “(이번 연설에서 언급된) 어렵고도 도전적인 문제들은 효율성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조치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역사적인 검토는 기업결합 부문과 기타 독점금지 부문에서 지난 25년간 거대하고도 지속적인 향상이 있어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잘못된 아이디어들은 폐기되어 왔으며, 이제는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거의 보편적인 합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기본적으로 학문적으로 주도되어 왔다는 사실은 아이디어의 힘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연설을 끝맺었다.

2002. 11. 8. 연방거래위원회

**미연방지법, MS사건 최종 판결**

지난해 11월 미국 연방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사(MS) 사이에 맺은 합의안에 대해 법원이 한국 시각으로 2일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Colleen Kollar-Kotelly 연방판사는 연방법무부와 MS의 합의안에 대해 공공의 이익이 큰 사안은 충분히 여론을 듣는다는 이른바 터너법(Tunney Act)에 따라 청문회 등을 진행해 온 바 있다.

그 결과 법원은 MS와 법무부가 합의한 반독점 소송 합의안 내용 중 대부분을 승인했다. 연방지방법원 Kollar-Kotelly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법원은 당시자가 공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도출한데 만족”하며 “이 사건의 최종 판결로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Kollar-Kotelly 판사는 합의안의 조치가 독점행위를 한 MS에 대한 시정 조치로는 너무 가볍다는 9개 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의안이 명확하고 일관되며 내용들이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 합의안에 포함된 시정조치는 적어도 5년간 지속되며 법원이 이를 연장시킬 수도 있으며, MS가 합의안의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별도로 설립하도록 한 기술위원회의 신설을 삭제하는 대신 MS 이사로 구성된 사내 준수위원회가 규정 준수를 감독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Kollar-Kotelly 판사는 MS와 법무부간의 합의안을 대부분 승인하면서 몇 가지 수정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원도우의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공개를 앞당기도록 했고, MS와 법무

부가 제안한 공개 시한을 6개월 앞당길 것을 지시했다. 또한 MS가 경쟁업체들에 피해를 주는 독점계약을 금지하고 반독점법 위반행위를 엄격하게 금했다. 이밖에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 단일화, 경쟁 제품을 채택하는 컴퓨터업체에 대한 보복금지 등의 조건도 부가했다.

이에 따라 MS는 법원이 명령한 준수위원회(compliance committee)를 구성했다. MS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이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출판 회장인 James Cash(54)를 위원장으로 하고, Merck & Co. 회장이자 최고경영자인 Raymond Gilmartin(61)과 레이건 행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Ann McLaughlin(60) 등 3명의 준수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했다. 이 준수위원회는 법무부와 MS가 맺은 화해안의 내용이 얼마나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 사법부에 보고하게 된다.

한편 연방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MS측은 "법원이 MS와 법무부 합의안을 조건부 승인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우리가 혁신을 계속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제품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방법무부 장관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 의사를 나타내면서, "법원이 MS의 불법적인 행동에 제동을 걸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공중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법무부는 MS가 최종 판결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MS 소송을 담당해 온 9개 주의 법무부장관들과 선마이크로시스

템스 등 MS의 경쟁사들은 MS에 대한 이행 조치가 미흡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의 합의안에서 명한 주정부들은 이와 같은 경쟁사의 불만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2. 11. 4.~12. CNet news.com

### ■ FTC, 경쟁법·정책과 보건에 관한 공청회 개최

미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인 Timothy J. Muris는 FTC가 보건(health care)과 경쟁법·정책에 관한 공청회는 내년 2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이 행사는 매년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공청회는 FTC와 미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이 공동 주관하게 된다.

이 공청회에서는 보건시장의 현황, 이 시장에서 경쟁과 독점금지의 역할 및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문제 등이 논의 될 예정이다. 이 공청회의 다루어질 주요 쟁점들에는 병원간의 합병, 비영리의 의미, 수직적 통합,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주(state)의 행위의 한계, 노어-페닝턴 법리(Noerr-Pennington doctrines), 독점력,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현행 구제조치의 적절성 및 FTC의 보건관련 시장에서 소비자보호 정책의 집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FTC 위원장은 제7회 경쟁포럼에서 Everything Old is New Again: Health Care and Competition in the 21st Century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한 바 있다. 이 포럼은 지난 11월 7일과 8일 양일간 시카고에서 열렸다.

여기서 그는 포괄적인 정책을 설명하면서, 현재 보건시장의 특성, 이 시장에서 경쟁의 중요성, FTC에서 고려하고 있는 반경쟁적 행위의 유형, 위원회의 집행 및 연구 의제, 품질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위원회의 노력 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Muris 위원장은 보건시장에서 몇몇 새로운 유형의 위반행위를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반경쟁적 행위들을 적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FTC는 최근 20년간 지속적으로 의사들의 가격 고정 사례들을 적발하고 있다. 최근의 사례 중에 몇 건에서는 전례 없는 숫자의 의사들 및 상담원들이 공동으로 가격고정을 한 사례들도 있다.

2002. 11. 7. 연방거래위원회

### ■ 미국 및 영국 탄소봉 생산회사, 가격고정 카르텔 관련 기소

미국 회사인 Morganite, Inc.는 미국 및 기타 국가로 판매되는 전지 탄소봉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가격 고정을 하기 위해 형성된 카르텔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그의 모회사인 영국의 The Morgan Crucible Company plc는 가격 고정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1월 4일 연방법무부가 발표했다.

Dunn, North Carolina의 Dunn에 위치한 Morganite사는 지난 1990년 1월초부터 2000년 5월까지 4가지 탄소봉 제품에 대해 가격고정을 한 혐의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 기소됐다. 기소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공모는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서 행해져 왔다. Morganite사는 이러한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적 벌금으로서 1천만 달러를 내는데 동의했다.

기소내용에 따르면, Morganite사는 다음과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

첫째, 유럽, 멕시코, 캐나다 등에서 회합이나 모임에 참가하여 미국 및 기타 지역으로의 탄소봉 제품 판매시 가격에 대해 논의했다.

둘째, 이러한 회합이나 모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가격을 제안하거나 관련 제품의 가격 인상이나 유지 등에 동의했다.

셋째, 자신의 경쟁자가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어떤 고객에 대한 가격 정보를 교환했다.

한편 Morganite사의 모회사이며 영국 Windsor에 위치한 The Morgan Crucible Company plc사는 가격고정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증인들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설득하고 또한 조사에 필요한 관련 증거 서류들을 폐기하도록 설득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이 회사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법원이 제시한 1백만 달러의 형사 벌금을 지불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는 미국내의 사업과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미국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내는 독점금지국의 또 다른 해결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Charles A. James 국장은 말했다.

가격고정을 행한 회사에 대한 서면 범상의 최고 벌금액은 1천만 달러이다. 이 금액은 당해 위법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의 합계 또는 위법행위로 잃은 손실의 합계가 범령상의 최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두 배까지 증

액될 수 있다. 재판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하나의 소의 원인마다 범령상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02. 11. 4. 연방법무부

## E U

### 마리오 몬티, 기업결합규제정책에 대한 개혁안 제시

마리오 몬티 EU경쟁위원은 지난 11월 7일에 브뤼셀에서 열린 IBA 컨퍼런스에서 기업결합규제정책을 급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그는 실제적 문제와 절차적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다음은 연설내용 중 실제규정과 관련된 주요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 서론

유럽공동체에서 기업결합규제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지 꼭 2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기업결합규제체계의 개혁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로 하여금 올 해 말에 개혁안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혁안은 1989년 12월에 EC 기업결합규제가 채택된 이래, 가장 만족할 만한 규제안이 될 것입니다. 이 규제안은 작년 12월에 EU위원회에서 채택된 녹색서(Green Paper)와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모두 수용하여 작성된 것입

니다. 이 작업에 참여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최근의 판결에 대한 코멘트

개혁안에 대해 설명을 하기에 앞서, 최근에 문제된 세개의 판결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EU위원회는 Airtours/First Choice, Schneider/Legrand 및 Tetra Laval/Sidel 사건에서 내린 금지 결정이 법원에서 기각됨으로써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EU재판소는 우리에게 매우 높은 정도의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절차나 결정문의 초안 작성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안을 더욱 강화하여 현재의 절차진행 과정을 더 간소화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의 판결에서는 EU위원회의 결정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의 관점을 확인해 준 것도 있습니다. 가령 Schneider/Legrand 사건에서 위원회의 결정을 기각하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프랑스에서 심각한 경쟁상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EU차원에서의 기업결합규제정책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며, 이를 더욱 근원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기업결합이 심각한 경쟁상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EU위원회는 이에 대해 개입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혁안의 목적**

개혁안의 목적은 부작용 없이 EU 기업결합규제시스템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기업결합규제는 EU 역내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산업구조를 유지시켜왔습니다. 이는 역내에서 국경을 넘는 거대한 기업결합에 대한 조사를 위한 “one stop shop”을 제공했습니다.

기업결합은 기업결합규제가 행해진 이래, 기대와는 달리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금지된 기업결합은 드뭅니다. 1990년 이래 모두 18건이 금지되었는데, 이는 전체 신고된 기업결합의 1%에도 미치지 않는 비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EU 기업결합시스템이 잘 집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번 개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EU 기업결합규제의 원래 목적과 장점들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본질적인 이슈들**

(1) 기본 테스트

EU위원회의 녹서에는 “실질적인 경쟁의 감소(substantial lessening of competition; SLC)”에 관한 테스트의 방법에 관하여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SLC 테스트를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기업결합이 유발시킬 수 있는 경쟁상의 문제들을 완전히 광범위하게 다룰 수 있도록 보다 더 본질적으로 적합한 테스트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기업결합지침 제2조상 시장지배력의 개념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SLC와 시장지배력 기준에 대해서는

최근에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광범위하면서도 집약적인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으며, 시장지배력 테스트는 다양한 상황에서 이용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는 기업결합의 동태적 영향을 분석하거나 정태 시장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며, 이 테스트가 적절하게 해석된다면 모든 범위의 반경쟁적 상황을 커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명성을 고양한다는 의미에서 나는 현행의 기본적인 테스트의 명확한 해설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안할 내용에는 EU재판소의 기업결합에 있어서 시장지배력에 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수평적 결합에 대한 지침안

기업결합규제에 있어서 위원회는 합리적이며 분석적인 접근을 하고자 하고 있으며, 지금 기업결합규제정책을 보다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수평적” 기업결합에 있어서 시장지배력의 분석에 관한 지침 초안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투명성이 제고되고 이해관계자들은 위원회의 의도를 명확히 알아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음 단계에서는 수직적 및 혼합결합에 대한 조사 지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들에서는 구매력이나 시장진입장벽 등 경쟁에 해를 끼치는 요소들과 효율성을 다룰 것입니다. 나는 후자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효율성 고려

우리는 기업결합에 있어서 효율성은 기존 규정의 자구를 바꾸지 않아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술적 경제

적 진보는 소비자의 이익을 가져오며 경쟁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기업결합규제지침 제2조 제1항 (b)의 규정은 명백한 법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지침에서는 위원회가 모든 기업결합 분석에 있어서 어떠한 효율성 주장이라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당해 기업결합이 발생하는 효율성의 결과로서 유효 경쟁이 의미 있는 정도로 제한되지 않는 경우 그 기업결합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거나 강화시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

EU의 기업결합규제정책은 구조 재편, 시장에서의 경쟁 유지 및 진입장벽의 제거 등을 통해 유럽내에서 구조적이며 경제적인 개혁을 촉진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기업결합규제, 카르텔 금지, 개방화 조치 및 보조금 지급 금지 등 경쟁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한 주요한 장기적 편익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기업결합규제시스템을 가능한 한 빨리 개정함으로써, 몇 년 이내에 유럽에서의 경제적 성공이 더 촉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02. 11. 7. EU위원회

**일 본**

**독점금지법 연구회 개최**

지난 10월 31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회 독점금지법 연구회가 개최되었다. 조치체계 전체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마련된 이 자리는 대학 교수들을 비롯한 15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국 측으로부터 신입회원에 대한 소개를 받은 후 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지고, 공정위 경제거대국장이 연구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그 다음 순서로 미야자와 겐이치 회장으로부터 연구회의 의사 공개방법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져, 관계자 이외의 방청은 인정되지 않지만 회의 종료후 의사개요 등을 공표하기로 하였다.

그 후 사무국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회원간의 자유토론을 거쳐, 조치체계 재검토회를 위한 모임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네기시 아키라 교수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제의 소재**

시장원리와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구조개혁을 달성하는 것은 현재 일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독점금지법상의 조치체계는 일본 기업들의 담합체질의 개선을 꾀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된다.

**검토의 관점**

현행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조치체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①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집행력과 억제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여부
- ② 복잡 미묘해지는 사건에 대한 적절

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카르텔로부터 이탈하는 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

- ③ 규제완화, 경제의 글로벌화, IT혁명의 진전 등에 수반하여 위반행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가와 관련되는 카르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체계가 적절한지 여부
- ④ 1977년 독점금지법이 조치체계(배제조치, 과징금 등)에 대해 대폭적인 재검토가 행해진 이후 25년이 경과한 후, 경제 상황 등의 변화로 인하여 다시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은 것이 아닌지 여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형사고발, 과징금, 배제조치 등 현행의 조치체계 전체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조치체계 재검토의 내용**

- ① 행정상의 조치와 형사고발의 기능 분담  
행정상의 조치로 대응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억제력 강화의 측면에서 행정상의 조치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한편, 행정상의 조치로는 부족한 악질적이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 조사권한 등의 도입 등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 ② 복잡 미묘한 사건에의 대응  
사건 심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

야 하는지(예를 들면, 간접 강제와 관련된 벌칙 강화 등)와 스스로 위반 사실을 당국에 연락했을 경우에 조치를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 과징금 감액의 가능성 특히, 전체 법질서 및 독점금지법 체계 전체와의 정합성의 관점에서 문제는 없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 ③ 가격 카르텔 등 기타 중대한 위반행위

이와 관련해서는 가격 카르텔 등 기타 중대한 위반행위란 어떠한 행위 유형인지와 이들을 과징금 적용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산정 기준은 어떠한지 하는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④ 1977년의 대폭적인 개정후, 2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문제

현행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심판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상실되는데, 이러한 문제나 심판 개시·유지 등의 행정비용의 증대 등을 방지하는 제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심판 건수가 증가하고 심판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의 신속화와 수수료 및 그 절차의 철저화도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심판 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공정위의 개입 전에 스스로 위반행위를 멈추어도 현재는 인센티브가 없는데, 이러한 경우 일정한 감액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02. 11. 7. 공정거래위원회